



제 418회 국회 (정기회)
제 6 차 국 방 위 원 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사회복무요원 가입 금지 정치단체 추가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2203659호)

2024. 11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부제출
2. 제출연월일 : 2024. 9. 4.
3. 회부연월일 : 2024. 9. 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5호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종류를 현행 정당 외에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,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제5호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) ① <u>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</u>	제32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) ① <u>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“정치단체”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</u>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 현·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거의 당선인·후보자·예비후보자 등

현행	개정안
② 사회복지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4. (생략) 5.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·④ (생략)	<u>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다른 사람</u>---- <u>정치단체</u>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□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¹⁾ (2020. 4. 23. 선고)한 취지에 따라,

2023년 제21대국회에서 「병역법」을 개정(2024.2.1.시행 법률 제19791호)하여 사회복지요원이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 가입 시 연장 복무 및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, 정당 가입 및 정치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32조의2를 신설 하였음.

1) 헌법재판소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: ‘그 밖의 정치단체’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 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,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‘정치단체’와 ‘비정치단체’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음(명확성의 원칙 위배)

□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로 정당에 더하여,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,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같이 공무를 수행²⁾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<사회복지요원의 정치행위 위반 현황>

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13명	1명	1명	7명	3명	1명	-

* 자료 : 국방부

□ 다만, 동 개정안을 통하여 가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단체만으로는 시민단체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단체 가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을 수 있으며, 사회복지요원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³⁾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2) 「병역법」 제31조(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) ① 사회복지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,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.

3) 헌법재판소 판례(헌법재판소 1998. 5. 28. 96헌가) :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,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‘방법’에 관한 규제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‘여부’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.

□ 최근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·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(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4.9.23.)에서 논의된 바,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
- 해외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사례가 흔하지 않음. 금지되는 정치단체의 유형을 5개로 특정하는 것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함.
-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·내용을 담은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안 통과 후 심사가 바람직함.

□ 한편,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공무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「국가공무원법」⁴⁾, 「지방공무원법」⁵⁾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 (행정안전위원회)에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307

4) 정부제출, 상임위 회부(2024.7.15) 의안번호 2201710, 미상정(2024.11.4.현재)

5) 정부제출, 상임위 회부(2024.7.15) 의안번호 2201709, 미상정(2024.11.4.현재)